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채미정 주변정비사업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체계적 생활체육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규 모 : 77,388m² (남통동 248번지 외 13필지)
- 기준가격 : 2,803,273천원

○ 건 물 (신축)

- 규 모 : 1,628m²(서원 등 12개동)
- 기준가격 : 9,768,000천원

채미정 주변정비사업

- 토 지 : 57,474m² (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
- 건 물 : 1,628m² (서원 등 12개동)
- 기준가격 : 10,579,873천원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 토 지 : 19,914m² (구미시 신동 637-1 외 6필지)
- 기준가격 : 1,991,400천원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 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 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합계		17건	79,016	12,571,273				
취득 (건물)	건물	야은서원	516	3,096,000	2016년	채미정 주변정비사업	구미시	건축비 기준
	건물	교육관 및 생활관	859	5,154,000	"	"	"	"
	건물	야은전시관	253	1,518,000	"	"	"	"
취득 (토지)	전	남통동 248	1,005	35,426	2014년	"	도량동 720 해평길씨 율리종파중증	
	임	남통동 산27-1	2,182	30,002	"	"	"	
	임	남통동 산25	8,375	115,156	"	"	"	기부 채납
	임	남통동 산25-5	1,192	16,390	"	"	"	"
	임	남통동 산26	14,550	200,062	"	"	"	"
	임	남통동 산27-2	10,116	139,095	"	"	"	"
	임	남통동 산28-1	20,054	275,742	"	"	원평동 400-9 선산김씨 문간종파중증	"
	답	신동 637-1	1,702	170,200	2014년	신동생활체육 시설조성	신동 576 장춘식 외 2	
	답	신동 637-2	3,157	315,700	"	"	신동 576 장 춘 식	
	답	신동 638-1	1,795	179,500	"	"	신동 576 조 옥 임	
	답	신동 638-2	2,608	260,800	"	"	신동 634 김 옥 자	
	답	신동 639-1	1,878	187,800	"	"	신동 630 장 동 회	
	구거	신동 642-3	274	27,400	"	"	한국농어촌공사	
	유지	신동 643	8,500	850,000	"	"	한국농어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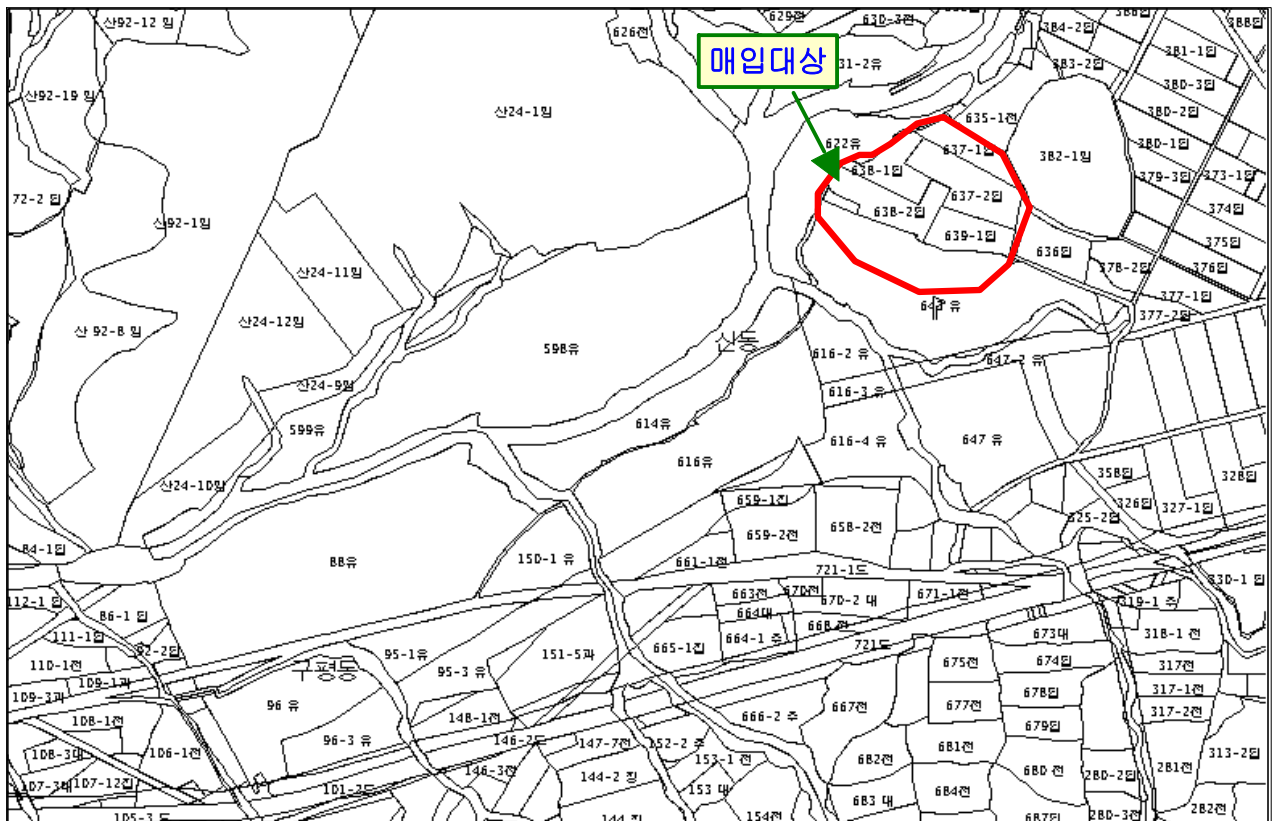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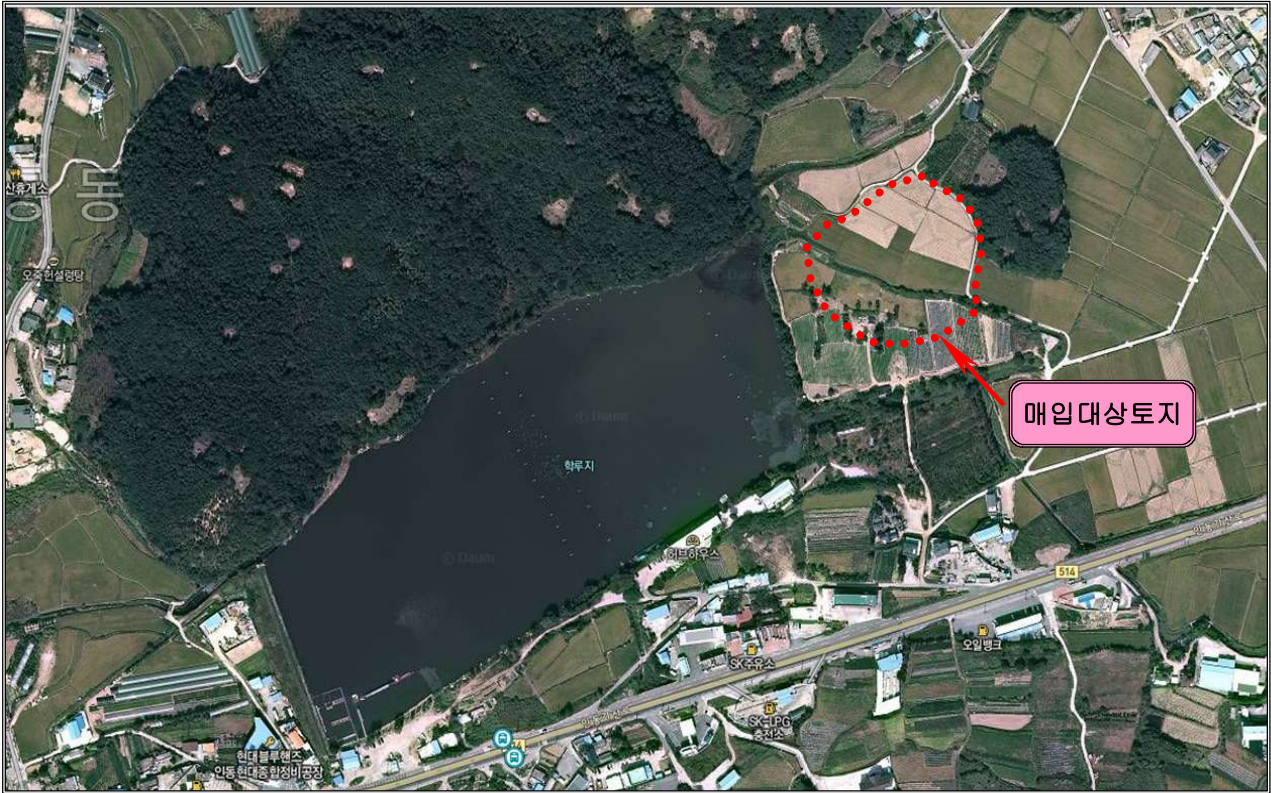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취득 현황

○ 위 치 : 구미시 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 (57,474㎡)



신동 체육시설 조성 토지 취득 현황

○ 위 치 : 구미시 신동 637-1 외 6필지 (19,914m²)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 경기도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000㎡(시·군·자치구의 경우 1,000㎡)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000㎡(시·군·자치구의 경우 2,00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